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122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피 고 1. B

2. C

3. D

4. E

변 론 종 결 2023. 4. 13.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소외 B와 망 F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8.

3. 2.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가. 위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나. 위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2,562,9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C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640,72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양수금채권

1) B는 2013. 8. 23. 주식회사 G로부터 250,000,000원의 드릴을 리스료 월 4,615,800원, 이자율 연 3.9%,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리스하였다가 그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G은 원고에게 B에 대한 채권을 양도한 후 이를 통지하였다.

2) 2022. 6. 8.을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변론종결일 현재 153,660,480원 및 그 중 63,276,381원에 대하여 2022.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다.

나. 망 F과 피고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1) 망 H은 2012. 8. 20. 사망하였고, 배우자 F(3/11), 자녀인 채무자 피고들(각 1/22)이 H의 재산을 각 지분별로 상속하였다.

2) 망 H의 상속인들은 2018. 3. 2.경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로 특정할 때에는 그 번호로 특정한다)을 F이 단독 소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F은 2018. 3. 2.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만 그 등기원인으로는 H이 사망한 ‘2012. 8. 20.자

협의분할'로 기재하였다).

3) 그 후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2020. 3. 19. '2020. 3.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의 사망

망 F은 2020. 4. 14.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들이 각 1/4 지분씩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에 대한 신용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 이전에 실행된 리스료 채권을 양수하여 취득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법원의 I에 대한 신용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대법원 등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2/11 상속지분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망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을 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행위는 위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는 위 행위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망 F 및 전득자인 피고 C, E의 약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

다. 사해행위의 취소

결국 피고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망 F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

1)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 및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C는 이 사건 제1 내지 3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하여

가) 갑 제5호증의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에 따라 망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4 내지 6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9. 피고 E 앞으로 ‘2020. 3. 16.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20. 7. 1.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21. 8. 11. 대한민국의 압류 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7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12. 소외 한국농어촌공사 앞으로, 2018. 4. 16. 소외 K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4. 16. 채권최고액 39,080,000원, 근저당권자 한국농어촌공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F의 이 사건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

나)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책임재산) 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지고, 배상하여야 할 가액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이다.

갑 제5호증의 4 내지 7,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한 피고 B의 상속지분 가액은 22,562,909원[= 124,096,000원(= 이 사건 제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 80,216,000원 + 43,880,000원) × 2/11 지분(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금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53,660,480원보다 적은 금액임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4 내지 7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사건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2,562,90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각 5,640,726원(= 22,562,909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 D,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망 F이 망 H의 배우자로서 44년간 함께 생활하며 같이 농사를 짓는 등 기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 B는 망 H으로부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별도로 증여받았다는 주장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그 미달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망 F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으로 기여분이 있다는 점과 피고 B에게 특별수익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미

부동산 목록

1. 충청남도 부여군 대 783㎡

2. 충청남도 부여군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부여군

목조구조 합석지붕 단층주택 39.7㎡

목조구조 합석지붕 단층주택 23.5㎡

목조구조 슬레이트지붕 단층주택 13.2㎡

3. 충청남도 부여군 대 424㎡

4. 충청남도 부여군 전 2979㎡

5. 충청남도 부여군 전 1412㎡

6. 충청남도 부여군 전 446㎡

7. 충청남도 부여군 답 2638㎡ 끝.

